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편집저작물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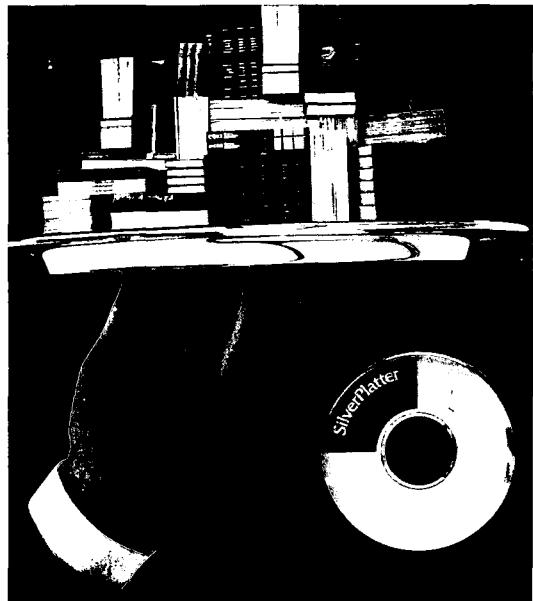
신각철 / 법제처 법제연구관

저작권법상 보호의 방법

DB 사업자 박갑동(가명)씨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일간·주간포함) 60여 종을 매일같이 수집하고 기사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등 각 부문별 체계적으로 분류·구성하여 코드화하고 주제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사 DB」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목록 DB」개발을 위하여 박갑동씨는 장기간 동안 지금부터 10여년전에 발행된 신문까지 모두 수집하여 그 기사들을 분류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인력이 소요 되었다. 이 「기사목록DB」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보호받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부정경쟁업자에게 의하여 DB자료가 복제되어 박갑동씨의 DB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법리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신문보도자료의 저작물성 문제

DB의 원시자료인 「신문기사 자료」의 저작물성을 검토해 보자.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문의 기사자료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자료에 해당되어 법적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 이



유는 신문 등 보도자료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논설·기행문·수필·소설 등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보도자료와는 별도로 보호 대상이 된다. 아무튼 「신문기사목록DB」는 거의 95%정도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보도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의 박갑동씨의 DB원시자료는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편집저작물로서의 요건문제

DB를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제6조)에서 「논문·수차·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편집저작물(DB저작물)로 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저작물이라 함은 복수의 저작물 또는 각종의 자료들을 측정의 의도아래 정리·배열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월간잡지 또는 영어단어장 등을 들 수 있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자료)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저작물성(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하여도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이나 배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독립되어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의 박갑동씨가 개발한 「기사목록DB」의 경우도 DB원시자료 즉 소재(素材)는 신문의 사실보도자료로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①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을 인정되고 ②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것 이라면 「기사목록DB」로서 충분하게 보호가 가능하다. 모든 DB는 위의 ②요건 즉, 정보처리장치(컴퓨터시스템)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크게 문제될 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재(DB원시자료)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 받는가에 있다.

이와 같이 ①의 요건이 항상 DB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신문기사를 그 내용별로 분류하고 배열하는 작업이 과연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성 즉 고도의 지적노력,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 활동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보통의 지적수준만 가지면 일정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류, 배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가 등등 DB저작물의 구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고 이 경우 획일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또는 아니된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DB자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다 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획일화할 수 없고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과 체계적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 것일 경우에 보호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관결로 정할 수 밖에 없다.

DB의 원시자료(소재)의 선택행위

편집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재(素材)의 선택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바, DB의 소재(원시자료) 선택에서도 창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일반 어문 저작물 예컨대 문학전집, 백과사전 등의 편집물에 있어서는 많은 소재(저작물)중에 유용성 있고 가치있는 자료를 수집·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지적 판단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DB저작물의 경우 소재의 선택에서 창작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DB구축을 위하여 원시자료를 수집·선택함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하여 유용성과 가치성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게 된다. 즉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선택해야 하는것」이 DB의 자료수집 원칙이다. 자료에 대하여 가치있다, 창작성이 있다, 유용성이 있다 등의 판단은 DB제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DB이용자에게 있다. DB제작자는 있는 정보를 총망라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고 정보에 대한 가치성·유용성의 판단은 이용자가

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DB의 소재선택에 대하여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DB를 종래의 저작권법 원리에 따라 일반편집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간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저작물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B는 엄격하게 보아 「예술성」이 요구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실용물(實用物)이다. 실용적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만 유용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면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은 DB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법리로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바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창작성」을 요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DB를 별도의 법률로 보호하든가 아니면 DB에 대한 보호 요건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장기간 소재의 수집 및 배열

DB개발을 위하여 오랜동안 그 소재의 「수집행위」에 대하여 창작활동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DB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원시자료(소재)를 수집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새로운 소재를 수집·축적하고 배열해야 한다. 이때 편집방침에 따라 소재를 수집하는 행위를 창작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편집방침, 편집내용이 창작성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DB저작물이 보호 받겠지만 이들 편집방침이 창작성이 없을경우는 그 수집행위도 창작활동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다.

따라서 DB구축에 있어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행위」도 다른 편집저작물에서 요구하는 배열의 창작성과 같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 미국·프랑스 등 최근 주요 선진국의 관례의 동향이다.

DB법적보호의 새로운 방향

DB는 정보화의 꽃이다. DB없이 정보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멀티미디어시대, 초고속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시대에 있어서도 DB산업발전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에 정보화 관련 세미나등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DB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약 하기 때문에 DB개발을 위한 투자에 위험부담이 느껴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특허법적 측면에서 처럼 예컨대 「관례DB」를 한사람이 개발했을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누구도 개발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등 법리에 맞지 아니하는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원리, 이용자(소비자)보호의 원리,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경쟁원리에도 전혀 맞지 아니한다. 특허법의 원리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발명」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DB는 자연법칙의 원리도 아니고, 고도의 발명도 아니다.

그렇다면 DB의 법적보호는 비관적인가! 그렇지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누구든지 성실하게 상당한 기간을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치있는 상품, 즉 소비자(DB이용자)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인식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DB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심하고 지금부터라도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특정인이 장기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DB)을 타인이 불법복제, 도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다 하여도 다른 법률 예컨대 민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DB**